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나2046952(본소), 2023나2046969(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 ·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나2046952(본소), 2023나2046969(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1가합505287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오하림, 최득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문재웅, 이호영, 김설이

변론 종결2024. 5. 24.

판결 선고2024. 7. 12.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1가합505287(본소),
2021가합529665(반소)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28,000,000원 및 그중 1,8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나머지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4.부터 2024. 7.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2,615,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1.부터 2024. 7.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8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75,461,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9.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원금 부분) 또는 감축(지연손해금 부분)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022,846,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7.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①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및 ②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지체상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③ 마스크 기계 매매잔금 청구, ④ 마스크 기계 매매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⑤ 마스크 부자재 매매대금 청구 및 ⑥ 마스크 부자재 수령 거부에 따른 창고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본소청구 중 ①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하고, ②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하며, 피고의 위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위 ① 청구 부분) 및 반소에 대한 부분(위 ③ 내지 ⑥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본소청구 중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위 ②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중 "증인 E"를 모두 "제1심 증인 E"로, "감정인 F"를 모두 "제1심 감정인 F"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부터 제10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마스크 부자재 매매대금 지급 청구 및 창고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주문명세서의 형식으로 마스크

부자재에 관한 공급을 요청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문한 마스크 부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20. 7. 2. 피고에게 합계 20억 8,4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부자재에 관한 주문명세서를 보냈고(을 제5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중국 제조업체에게 마스크 부자재의 공급을 요청하여 합계 499,551,000원 상당의 부자재를 수입하였다. 피고는 수입한 위 마스크 부자재 중 합계 152,615,595원(= 1차 납품 134,157,045원 + 2차 납품 18,458,550원) 상당을 원고에게 공급하였지만 원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는 나머지 346,935,405원(= 499,551,000원 - 152,615,595원) 상당의 부자재를 수령하지 않았고, 피고의 수령 최고에도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마스크 부자재 수령 거부로 위 마스크 부자재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창고비를 지출하고 있었는데,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마스크 부자재의 가격이 수입 당시와 비교하여 대폭 하락함에 따라 피고는 창고비를 계속하여 지출할 수 없어서 남은 마스크 부자재를 타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마스크 부자재 매매대금 합계 499,551,000원(= 위 152,615,595원 + 위 346,935,405원) 및 창고비 상당의 손해배상 9,900만 원을 합한 598,55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의 "을 제7호증의"를 "을 제7, 21, 23, 30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7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이 사건 1, 3번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된 나머지 기계들에도 당연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감정의 대상이 된 이 사건 1, 3번 기계 외에 나머지 기계들에 대하여도 별도로 하자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각 기계는 모두 같은 제품명과 규격의 기계인 점(세부적인 모델명도 모두 동일하다), ㉡ 이 사건 각 계약 또한 2020. 6. 24.부터 2020. 7. 27.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모두 체결되었던 점, ㉢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기계의 규격 및 구조 등에 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는 점, ㉣ 앞서 본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1, 3번 기계 외 나머지 기계들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은 후 숙련된 기술자의 도움 없이 임의로 기계를 작동하는 등 사용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계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제작사로부터 기술자를 초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기계의 제작사에서 2명의 기술자가 파견되어 적어도 2020. 7. 28.부터 2020. 8. 10.까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기술지도 등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며(을 제21, 23, 30호증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20. 8. 목표 생산량의 약 10%에 불과한 마스크만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통해 약 105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에는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기계가 피고가 보증한 성능대로 작동한다면 3대의 마스크 기계를 56시간만 정상 운행하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양에 불과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1)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특정하여 구매를 요청한 이상, 이 사건 기계의 성능을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특정하여 피고에게 기계의 공급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2022. 10. 17.자 감정서 제2권 제17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감정 당시 감정인에게 '피고는 마스크 장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원고 측 협회에서 고속 마스크 생산 장비를 중국에서 찾아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위탁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기로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전형적인 매매계약에 해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상법 제69조에서 정한 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갑 제9, 19호증, 을 제21, 23,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다가 이러한 증거들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1번 내지 3번 기계를 인도받은 직후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고속 생산시 위 기계들에 잔고장과 부속품 파손, 귀곤 용착 불량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 측 다수의 장비 기술자들이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2개월 여간 노력하였으나 구체적인 문제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기계들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피고에게 그 하자를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0행부터 제16면 제14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5행의 "라."를 "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6행부터 제17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 기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2,128,000,000원(= 이 사건 1차 계약 1,408,000,000원 + 이 사건 2차 계약 420,000,000원 + 이 사건 3차 계약 300,000,000원) 및 그중 1,828,000,000원(= 이 사건 1차 계약 1,408,000,000원 + 이 사건 2차 계약 42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1, 2차 계약에 따른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는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1, 2차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이 사건 1 내지 3번 기계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반환의무는 피고의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그 의무에 대하여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설령 그러한 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9호증(내용증명)의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반환의무에 대하여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 2차 계약에 따른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0행의 "그런데"부터 같은 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피고 주장 자체로도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3차 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는바,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3차 계약의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피고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행하더라도,』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6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를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을 제46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중국의 마스크 기계 제조업체로부터 계약금 20억 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8행부터 제18면 제1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마스크 부자재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마스크 부자재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20. 7. 14.경 134,157,045원 상당의, 2020. 7. 21. 18,458,550원 상당의 각 마스크 부자재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마스크 부자재 매매대금 합계 152,615,595원(= 134,157,045원 + 18,458,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수령 마스크 부자재 매매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중국에서 수입한 499,551,000원 상당의 부자재 전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을 제5호증(주문명세서)상 발신인은 피고로, 수신인은 원고의 지사 또는 지점인 C로 각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단에 입금계좌정보로 피고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문명세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서로서 제품의 종류 및 단가 등을 설명하거나 제안하는 문서로 보일 뿐인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문명세서 하단에 입금계좌정보로 피고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수신과 발신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위 주문명세서의 작성일은 2020. 7. 2.인데, 그 시점은 원고가 2020. 6. 19. G 주식회사와 사이에 덴탈마스크 12억 장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이고, 아직 피고로부터 이 사건 1번 기계를 인도받기도 전인 점, ③ 위 주문명세서에는 마스크 부자재의 구체적인 인도 시기나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5, 48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346,935,405원(= 위 499,551,000원 - 위 152,615,595원) 상당의 마스크 부자재에 관한 개별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던 ① 포장기기 반납금 90,000,000원, ② 장비입고 지체상환금 24,960,000원, ③ 번역료, 수수료 및 장비수리비 1,349,500원, ④ 마스크 이어밴드 교환차이로 인한 금액 9,000,000원, 총 126,309,500원 상당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위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포장기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정리한 수입 및 지출현황에는 원고가 3대의 포장기기를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반해 피고는 원고에게 1대의 포장기기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2023. 5. 25.자 피고 준비서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포장기기가 몇 대인지 알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피고에게 포장기기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포장기기가 피고에게 반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 또한 없는 점, ② 장비입고 지체상환금 24,960,000원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피고는 이 사건 마스크 기계를 원고로부터 상품대금을 입금받은 후 14일 이내에 납품완료한다. 만일 14일이 지나 납품이 지연될 경우, 총 지체일수에 지체상금률(100분의 0.3)과 총 구매 계약금을 곱한 금액을 원고에게 변상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매도인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에 관한 규정인 점, ㉡ 위 제2조는 피고가 납품을 지연할 경우 원고가 이미 납부한 구매대금에 대하여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체상금 산정대상 및 지급 방법에 비추어 보면 위 지체상금 조항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마스크 기계 인도 의무를 지체한 기간에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점, ㉢ 이 사건 계약은 제6조에서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마스크 기계의 품질이 샘플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피고에게 위약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의 위약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체상금 조항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의 불완전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법정이자를 포함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지체상금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번역료, 수수료 및 장비수리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1,349,500원 및 마스크 이어밴드 교환차이로 인한 금액 9,000,000원은 원고가 실제로 해당 지출을 하였는지 불분명하거나 원고의 해당 지출로 인해 피고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각 자동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의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3)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마스크 부자재 매매대금 152,615,59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4. 9.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4.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7.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9 내지 12행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박성운

판사정경근

판사박순영

1) 제1심에서 피고는 2023. 1. 17.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2차 계약에 기한 잔금 219,285,450원, 이 사건 3차 계약에 기한 잔금 2억 원 및 이 사건 3차 계약 관련

손해배상 1억 5,000만 원 외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453,560,702원(= 미수령 마스크 부자재 매매대금 354,560,702원 + 참고비 상당 손해배상 99,000,000원) 합계 1,022,846,152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당초 반소장에서는 마스크 부자재 매매대금 152,615,595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마스크 부자재 매매대금 138,741,450원을 모두 수령하였다면서 해당 부분을 청구에서 제외하였다), 2023. 5. 25.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부분 주장을 556,351,000원(= 마스크 부자재 매매대금 152,615,595원 + 미수령 마스크 부자재 매매대금 346,935,405원 + 참고비 상당 손해배상 56,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그에 따른 청구취지의 확장을 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는 이 법원에서 2024. 4. 9.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기존 제1심에서의 피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다만 참고비 상당 손해배상은 위 2023. 1. 17.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와 같이 99,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기존 청구취지에 마스크 부자재 대금 152,615,595원을 더한 1,175,461,747원(= 기존 청구취지 1,022,846,152원 + 위 152,615,595원)을 그 청구취지로 표시함으로서 피고의 위 주장에 따른 합계 금액 1,167,836,450원(= 이 사건 2차 계약에 기한 잔금 219,285,450원 + 이 사건 3차 계약에 기한 잔금 2억 원 + 이 사건 3차 계약 관련 손해배상 1억 5,000만 원 + 이 부분 598,551,000원)과 청구취지 사이에 7,625,297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착오로 보이는 청구취지의 기재가 아닌 피고의 위 주장을 기초로 판단한다.